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9. 6.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8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8월 28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90회(제1차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2. 9. 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일원화(안 제4조제2항)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제명규정 중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
-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안 제7조제2항)
 -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 허용
 - 이와 관련 주민자치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징수한 “수강료”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 지급 가능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 강화(안 제7조제4항 내지 6항)
 -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함
 -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
 -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
 - ※ 「별표 1」로 사용료 및 수강료 상한선 규정
 - 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관리(구의세입으로 처리)
 -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
-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10조제5항)
 - 구청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 「별표 2」로 규정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안 제11조제5항)
 - 동장은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 가능
- 2)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의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
 - 종전에는 위원수를 “15~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음
 -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안 제1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
 -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1/3 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
 - 신규 위촉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공개
 -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안 제17조제7항)
 -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 보장
 -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 제고(안 제10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제4항)
 -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결·집행기능 부여
 - “수강료”의 징수범위·요율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
 -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수행
 - 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 등
 -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안 제17조제2항, 제20조제1항)
 -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여 역량 있는 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
 - 해촉요건에 있어서도 “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를 해태한 경우” 등을 추가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안 제17조제1항 및 제7항)
 - 시·구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홍수)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주민복지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주민복지센터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활동비를 “수강료”중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안 제7조), “사용

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토록 하였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하여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10조), 또한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등이 시설장비 하자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조항 등을 신설(안 11조)

다음으로 종전에 위원수를 “15~25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폐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당연직 고문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임과 해촉 등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본 조례개정(안) 제17조제1항 중 당연직 고문의 대상인 “시·구의회 의원”이란 표기의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의 “시의원”을 말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요지

- 본 조례 제17조(구성 등)1항의 자치위원수를 종전과 같이 수정하고, 본 조항의 고문의 수를 조정하여 다수 고문으로 인한 조직 의사결정 과정의 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고문의 대상자인 “시·구의회 의원”이란 표기의 “시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의원이 아닌 일반 자치단체의 “시의원”을 말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정함.

나. 수정주요골자

- (안) 제17조(구성 등)1항의 내용 중 「25인 이내」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종전과 같이 수정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2인 이내의 고문」으로 수정하며, 또한 「시·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구성 등)1항의 “25인 이내”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종전과 같이 수정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2인 이내의 고문”으로 수정하며, 또한 “시·구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